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

의안 번호 1342

발의년월일 : 2020년 2월 17일

발 의 자: 서운기, 노식래, 이영실,

김경영, 박기재, 박순규,

양민규, 오중석, 이동현,

이성배, 임종국, 한기영,

홍성룡 의원(13명)

1. 주 문

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주요안건을 처리하고 긴급현안에 대해 질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별첨과 같이 요구합니다.

2. 제안이유

주요안건을 처리하고 긴급현안에 대해 질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함.

3. 참고사항

- ○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
- ○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49조, 제53조

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

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주요안건을 처리하고 긴급현안에 대해 질문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4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.

○ 출석 장소 :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

○ 출석 이유 : 주요안건 처리, 긴급현안질문

○ 출석 일시 : 2020.2.21.(금), 3.6(금) <2일>

○ 출석 대상

[서울특별시]

서울특별시장, 부시장, 실·국·본부장,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원, 출자·출연법인의임원, 「지방자치법」 제113조에서 제116조까지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및 답변에 필요한 3급 이상 공무원 등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49조제3항에 규정된 자

[서울특별시교육청]

서울특별시교육감, 부교육감, 실·국장 및 답변에 필요한 3급 이상 소속 공무원 등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49조제3항에 규정된 자